

199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1992. 7. 1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1992. 6. 30
- 다. 회부일자 : 1992. 7. 8
- 라. 상정일자 : 1992. 7. 9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회 부 예 산 액	비 고
계	5,200,000	
지 방 세	500,000	
세 외 수 입	2,428,557	
보 조 금	2,271,443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회 부 예 산 액	비 고
계	5,200,000	
의 회 비	65,455	
일 반 행 정 비	2,281,878	
사 회 복 지 비	1,216,629	
산 업 경 제 비	47,823	
지 역 개 발 비	1,593,429	
문 화 및 체 육 비	6,028	
민 방 위 비	△56,387	
지원및기타경비	45,136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 과목 착오 편성으로 인한 과목 정정으로 세입, 세출 예산 부분 증감없음.

3. 심사결과

가. 세 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구한 세입예산 52억원은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 24억 2,855만7천원 보조금 22억7,144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 세입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나. 세 출

-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필수적 법정 경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및 시설비, 경로시설등 사회복지시설, 기타지역개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다만 총무과 소관 신청사 청소업무 대행료중 1,000만원, 대회의실 음향기기세트 구입비 600만원, 반회보 발간을 위한 수용비 952만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보상금 100만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설치비 500만원, 장바구니 구입비중 306만원등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키로 의결하였으며 과다계상된 시책추진 정보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0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성서1동, 월배3동 이륜차 구입비 160만원, 월배1동(월성동 1160번지선)하수도 복개 공사비 6,868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코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였음.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과목정정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

4.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예산요구액	삭 감 액	비 고
계				△70,580	
일반경상비 및 사업비	소 계		136,260	△35,580	
		신청사청소업무대행료	76,620	△10,000	총 무 과
		대 회의실물품구입비	6,000	△6,000	"
		반 회 보 발 간	38,520	△9,520	"
		씨 름 왕 선 발	3,000	△1,000	"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구입	5,000	△5,000	청 소 과
		장 바 구 니 구 입 비	6,120	△3,060	"
		음 향 기 기 세 트	1,000	△1,000	보 건 소
시책추진 경 비 (정보비)	소 계		119,000	△35,000	
		구 정 추 진	55,000	△10,000	구 청 장
		여 론 수 령	25,000	△10,000	부 구 청 장
		새 질 서 새 생 활 추 진	7,000	△1,000	총 무 국 장
		사회복지증진활성화추진	10,000	△1,000	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사업추진	5,000	△1,000	도 시 국 장
		달서발전5개년계획수립	3,000	△3,000	기 획 계
		재원조달업무추진	3,000	△3,000	예 산 계
		감 사 업 무 추 진	1,000	△1,000	감 사 계
		구청홍보업무추진	4,000	△1,000	문화공보실
		동 행정 강화 대책	1,000	△1,000	서 무 계
		인 사고 총 상 담 처 리	1,000	△1,000	인 사 계
		동 업 무 지 도	1,000	△1,000	행 정 계
	세원발굴업무추진	3,000	△1,000	세 무 과	

5. 수정동의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70,580	
1	월배1동(월성동)1160번지 선하수 도 복개 공사비	68,000	· 사업개요 B=1m H=1m L=250m · 사업비 : 68,000천원
2	시설부대비	680	· 공사비의 1%
3	이륜차 구입	1,600	· 성서1동, 월배3동에 대한 동행 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
4	예비비	300	

※ 건의사항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신청사 창고 앵글 설치비 예산을 주무 부서인 한부서에서 일괄편성하여 설치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

6. 기타건의사항

- 새마을 용자금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구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반회보 발간시 당초 계상된 예산의 범위를 무시하고 집행된 사례가 있었으면 차후 집행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 하였음.
-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필요시 청소대행 업자에게 협조를 받아 설치토록 건의